

체류외국인 278만 명 시대 ...

외국인 · 이민자 복지 실태 데이터로 살핀다

-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맺고 데이터 연계 · 결합 및 가명정보 활용 협력 -
- 데이터 · 연구역량 모아 이민자 · 외국인 복지 체감도 향상 뒷받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과 9월 21일(월)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정책분석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216만 명에 달한다.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이민자·외국인이 늘면서 질병·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실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정책연구에 활용할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외국인 가구의 실제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보건복지정책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력 분야는 ▲데이터를 활용한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분야 연구·정책분석, ▲이민자·외국인 관련 데이터의 연계·결합 및 가명정보 활용, ▲양 기관 보유 정보 및 운영 시설의 상호 이용, ▲연구 성과물·통계자료 등의 상호 공유 및 정책 확산 등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담당본부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책임자	한상필 소 장	02-6360-4600
담당부서	데이터관리부	담당자	서종민 부 장	02-6360-4601



업 무 협 약 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이민자의 보건복지정책 분야 연구·정책분석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연구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협력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데이터를 활용한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분야 연구·정책분석 상호 협력
2. 이민자·외국인 관련 데이터의 연계·결합 및 가명정보 활용 협력
3. 양 기관 보유 정보 및 운영 시설의 상호 이용 협력
4. 연구성과물·통계자료 등의 상호 공유 및 정책 확산
5. 그 외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양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는 협약서의 효력 상실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2. 이미 공지되었거나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④ 본 협약에 따른 공동 연구성과의 대외 공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② 데이터의 구체적인 제공·연계·결합 및 활용은 본 협약과 별도로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양 기관이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제7조 (협의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법적구속력 배제) 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로 인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비밀유지), 제6조(개인정보 보호 등)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9월 21일



원장 김 현 준



원장 우 병 렬